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합 이사장 연임제한을 중임제한으로 강화〉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90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합 이사장 중임제한(안 제52조제2항)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6.
3. 회부연월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은 이사장이 두 차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지 못하여 사실상 장기간 동일 인물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장기 재임으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경쟁의 위축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연임 후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단서).

Ⅲ. 검토의견

1. 조합 이사장 중임제한(안 제52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u>두 차례만 연임</u> 할 수 있다.	② ----- <u>두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함)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중임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이사장이 연임 후 간격을 두고 재선출되어 장기적으로 재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하는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임(連任)”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임기가 끝난 후 곧바로 새로운 임기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난 이후 또는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하여

그 자리에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경우라도 다시 같은 직책을 거듭하여 맡는 경우 중임에 해당함.

따라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연속하여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연속하지 않고 임기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임기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이 제한되므로, 중임제한이 연임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2018년 3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자율적 임원선출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으나, 특정 임원이 장기간 연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사조직화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이사장의 연임을 2회(최장 12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¹⁾

또한, 다른 법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조합 이사장(조합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유사하게 최대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 2017. 7. 25. 제20대 국회 제352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p.5.

조합 이사장(조합장) 연임 관련 입법례

구 분	임기	연임여부	근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4년	2회 연임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농협조합장	4년	2회 연임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
수협조합장	4년	2회 연임 (비상임 1회 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산림조합장	4년	2회 연임 (비상임 제한없음) ²⁾	「산림조합법」 제38조제1항
지역금고 이사장	4년	2회 연임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3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4년	2회 연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2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동일인이 이사장직에 장기 재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협동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최근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부족 및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점³⁾ 등을 감안할 때 이사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2)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5월 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3)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조합 이사장 선거의 경우 이사장 후보자 부족으로 인하여 추대에 의한 선거(1인 출마+현장추대) 비율이 평균 90%를 상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中企협동조합 이사장 선출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1~3			합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횟수	9	176	185	32	247	279	19	228	247	29	188	217	5	68	73	94	907	1,001
비율	4.9	95.1	100	11.5	88.5	100	7.7	92.3	100	13.4	86.6	100	6.8	93.2	100	9.4	90.6	10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강화할 것인지 여부는,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자율적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 가지는 임원 선출의 자율성 간의 균형 필요성, 당초 법률에서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한 경위와 취지, 유사 입법례 및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사장 및 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제2215822호)과 이사장 및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모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제2217524호)이 각각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463